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1-7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9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정이유

마포구의 지역 인재를 발굴, 육성하기 위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(안 제1조)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인재를 발굴, 육성하기 위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나. 설립 (안 제4조)

- 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함

다. 사업 (안 제5조)

- 재단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 사업을 함

라. 재산의 조성(안 제9조)

- 재단 설립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운영 재원은 구의 재정출연금, 기부금품 등의 수입금, 기본재산 운용 이자 수익금으로 함

마. 정관(안 제10조)

- 재단의 정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정관 변경 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

바. 임원 및 이사회, 사무국 구성(안 제11조 ~ 14조)

- 임원 및 이사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, 감사는 2명으로 함

- 이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함
- 이사회에는 선임직과 당연직이사를 둠
- 재단의 사업수행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둠

사. 행정지원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(안 제16조 ~ 제17조)

- 재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 또는 재단업무의 일부 겸임할 수 있도록 함
-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료를 감면 받도록 함

아. 재정지원(안 제18조)

- 재단의 설립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할 수 있도록 함

자. 지도감독(안 제19조)

-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시 보고 또는 확인, 검사 할 수 있도록 함.
- 재단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

차. 재단에 대한 제재(안 제20조)

- 재단의 운영이 조례나 정관 등의 규정을 위반했을 시 출연금 중지 또는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함

3. 제정근거

- 가. 「교육기본법」 제28조(장학제도 등)
- 나. 「민법」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- 다.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4. 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1. 9. 1 ~ 9. 20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 결과 : <원안동의>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1. 9. 29) : 수정의결

붙임 :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인재를 발굴,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재정출연금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예산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재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「민법」과 「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설립) 재단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제5조(사업)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
2. 예능·체육·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
3. 우수대학생의 해외연수(유학)사업
4.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
5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.

1.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 중·고·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2.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선발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3. 예·체능 분야 국가 공인 대회에서 입상한 중·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

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세부적인 선발 및 지급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수익사업)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자료제공)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,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9조(재산의 조성)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의 재정출연금
2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구의 재정출연금
2.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
3.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

제10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 및 명칭, 사무소의 소재지
2.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·상태 및 평가액
3.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
4. 이사 및 감사,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에 관한 사항
6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7.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
8.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
9.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
10. 업무 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1조(임원)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
② 이사장과 이사는 구 공무원, 인재육성 등 장학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.

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④ 대표 이외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선임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당연직 이사는 구의 관련국장(행정관리국장, 기획재정국장, 주민생활국장)으로 한다.

⑤ 이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2조(이사회)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의 총괄한다.

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사무국)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.

제14조(회계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5조(사업계획 등의 제출)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세입·세출에 관한 예산·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·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
2.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·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

제16조(행정지원) ①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17조(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)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8조(재정지원)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지도감독)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.

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및 회계·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검사 결과 재단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재단이 장학금 수혜자 사후관리 및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을 추진하도록 지도한다.

제20조(재단에 대한 제재)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제19조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조례,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
2.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
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
4. 지도·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
5.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